투자 위험 등급 :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New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New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New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4년 10월 1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10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2022년 12월 28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및 판매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24.10.13)

키움New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Z702]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재간접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키움New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 및 채권 관련 상장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하며, 스마트 인베스터(Smart Investor) 분할매수 전략에 따라 주식 관련 ETF의 편입 비중을 조정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시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5% 수준으로 투자한 후, KOSPI 200 지수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구간에서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면, 주식 관련 자산에 정해진 투자비율로 분할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하 "스마트 인베스터(Smart Investor) 전략"). 또한, 정해진 리밸런싱 수익률을 충족할 때 마다 주식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5% 수준으로 조정한 후 주식 관련 자산을 다시 분할 적립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 금액의 0.8%	0.84	0.4	0.70	0.846	165	256	350	555	1,1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1.24	0.8	1.04	1.246	128	262	403	706	1,606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 금액의 0.4%	0.64	0.2	0.40	0.646	106	175	248	404	8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84	0.4	0.58	0.846	87	178	273	479	1,09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설정시점 기준 연 0.06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예상치로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10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2.27~ 2024.02.26	2022.02.27~ 2024.02.26	2021.02.27~ 2024.02.26	2019.02.27~ 2024.02.2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3.01.11	9.76				8.92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01.09	9.98				9.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3.01.11	9.33				8.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1.11	9.76				8.92
비교지수						
수익률 변동성	2023.01.09	7.84				7.45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재간접형, 단위: %)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책임	김종협	1978	본부장	85 개	20,703	6.50	15.36	6.50	15.36	12년 8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 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8">주요투자
위험</td><td>구 분</td><td>투자위험의 주요내용</td></tr>
<tr><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재간접 투자
위험</td><td>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은 타 집합투자업자의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고 다른 투자신탁 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 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의 평가가격일 수 있습니다.</td></tr>
<tr><td>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위험</td><td>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통화 등의 지수에 연동하는 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펀드자산의 가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서도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 및 기타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해당국의 증권시장 법령, 세제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td></tr>
<tr><td>투자전략 실행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등락 과정에서 사전에 나누어진 구간에서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식관련자산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 따라 매수 조건이 발생한 가격 수준에서 주식관련자산을 매입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관련자산의 매매과정에서 계획된 투자전략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ETF 투자에
따른 추적
오차
발생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주식부분은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채권부분은 채권 및 채권 상장지수펀드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될 예정이며, 상장지수펀드는 그 추종 지수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상장지수펀드에서 발생하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KOSPI200 지수 및 채권 지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유동성 위험</td><td>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
의 해지 위험
및 임의 전환
위험</td><td>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당사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2">매입방법</td><td colspan="2">·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td><td rowspan="2">환매방법</td><td rowspan="2">·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2">해당사항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able>

<table>
<tr><td>기준가</td><td>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table>
<tr><td>구분</td><td>과세의 주요내용</td></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u>2024년 10월 30일</u>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d colspan="2">종류(Class)</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td></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td></tr>
<tr><td>수수료후취</td><td>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u>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u></td></tr>
<tr><td rowspan="2">기타</td><td>무권유 저비용(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able>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기관(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3. 모집예정금액 9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9
5. 인수에 관한 사항 10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1
4. 집합투자업자 11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4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4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8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0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2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8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9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3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38
1. 재무정보 3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2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6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47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8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8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9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9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1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1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53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4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7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57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58
[붙임] 용어풀이 59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키움New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	DZ7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Z703
수수료선취-온라인(A-e)	DZ7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Z7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Z7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Z7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Z7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Z7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Z7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DZ7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DZ71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Z7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Z7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DZ715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Z7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Z717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2)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재간접형)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5)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1좌는1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로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2022년 12월 28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키움New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1호[혼합-재간접형]	DZ7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Z703
수수료선취-온라인(A-e)	DZ7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Z7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Z7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Z7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Z7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Z7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Z7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DZ7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DZ71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Z7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Z7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DZ715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Z7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Z71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3.01.09	최초 설정
2023.03.24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민수→임관호)
2023.04.2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도윤→노아름)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4.03.12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증권대차거래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등)
2024.04.04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노아름→김종협)
2024.10.30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2층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4.10.13 현재)

1)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재간접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책임	김종협	1978	본부장	85 개	20,703	6.50	15.36	6.50	15.36	*운용경력: 12년 8개월 (2007.10. ~ 2011.12.) 국민연금공단 해외증권실, 주식운용실 (2012.01. ~ 2013.11.) 유진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 (2013.11. ~ 2016.12.) 키움자산운용 알파운용팀 (2014.10.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본부장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김도윤	최초 설정~ 2023.04.26
	노아름	2023.04.27 ~ 2024.04.03
	김종협	2024.04.04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민수	2023.01 ~ 2023.03
	임관호	2023.03 ~ 2023.04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2)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기관(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재간접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펀드로 집합투자기구 구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다양한 자산운용회사의 상장집합투자기구(ETF)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종목의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KOSPI 200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주식형 ETF 및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채권형 ETF를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 선정하였으며, 기초지수와의 추적오차(괴리도) 및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괴리율)을 점검하여 편입 시점에 최적의 ETF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편입하고자 하는 ETF의 기타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식형	채권형
거래대금(3개월평균)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주요투자대상	KOSPI200	단기채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집합투자증권등	60%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
②주식	40%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
③채권	40%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권,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④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0%미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
⑤장내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내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⑥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⑦증권의 대여[1]	증권 총액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50%이하	
⑧증권의 차입[2]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여 수익률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 투자대상 자산 예시

- 주식형 ETF에 관한 사항

구분	KOSEF 200	KODEX 200	TIGER 200	KBSTAR 200	ACE 200
기초지수	코스피 200	코스피200	코스피 200	코스피200	코스피 200
총보수	0.13	0.15	0.05	0.017	0.09
자산운용사	키움투자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시가총액	2,899억원	54,424억원	18,299억원	10,397억원	4,809억원
거래량(3개월평균)	92,830	8,172,901	1,434,814	219,981	182,134
거래대금(3개월평균)	28억원	2,481억원	437억원	67억원	56억원

* 자료의 작성기준일 및 출처 : 2022.12.07,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및 Dataguide

* 상기 지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거래소(KRX)의 홈페이지(http://marketdata.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형 ETF에 관한 사항

구분	KODEX 단기채권PLUS	TIGER 단기통안채	KBSTAR 단기통안채	ACE 단기통안채	KOSEF 단기자금
기초지수	KRW Cash PLUS 지수(총수익)	KIS 통안채 3개월(총수익)	KIS 통안채 5개월 지수(총수익)	KIS MSB 단기지수(총수익)	MK 머니마켓 지수(총수익)
총보수	0.15	0.09	0.13	0.07	0.05
자산운용사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시가총액	12,001억원	13,632억원	2,574억원	2,102억원	655억원
거래량(3개월평균)	495,891	914,459	552,714	6,509	4,242
거래대금(3개월평균)	517억원	928억원	585억원	7억원	4억원

* 자료의 작성기준일 및 출처 : 2022.12.07,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및 Dataguide
* 상기 지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거래소(KRX)의 홈페이지(http://marketdata.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라.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9 호의 2 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0.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비율 제한의 예외	① 다음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7조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 제3호본문,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2)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 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 및 채권 관련 상장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하며, 스마트 인베스터(Smart Investor) 분할매수 전략에 따라 주식 관련 ETF의 편입 비중을 조정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시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5% 수준으로 투자한 후, KOSPI 200 지수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구간에서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면, 주식 관련 자산에 정해진 투자비율로 분할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하 "스마트 인베스터(Smart Investor) 전략"). 또한, 정해진 리밸런싱 수익률을 충족할 때 마다 주식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5% 수준으로 조정(리밸런싱)한 후 정해진 룰에 따라 주식 관련 자산을 다시 분할 적립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인베스터(Smart Investor) 전략>

- 최초 설정 시 주식형 자산을 자산 내 25%로 편입하고, 이후 정해진 룰에 따라 주식형 자산에 대하여 자동분할매수를 실행하는 전략으로 전략 실행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합니다.
- 스마트 인베스터(Smart Investor) 전략 수행 시 개별 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KOSPI 200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운용할 예정이며, 이외의 자산은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채권 및 통안채 등에 투자하는 국내 채권형 ETF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주식 관련 자산에 대한 편입비중이 100% 가까운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4% 리밸런싱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간이 120영업일 이상 지속될 시, 주식 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50%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이후에는 기존의 스마트 인베스터 분할 매수 전략을 다시 실행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인베스터(Smart Investor) 전략 예시>

- 설정시점에 주식형 자산 (KOSPI200추종 ETF)에 25% 투자 (순자산 기준) (오른쪽 그림에서 ①번 시점이 설정시점)
- KOSPI200지수 기준으로 2.0% 수준의 상하 밴드 설정
- 설정시점 or 직전 매수시점 대비 하향 이동 시 순자산액의 약 3% 주식형 ETF 매수 (차트 2, 3, 6, 7 구간)
- 설정시점 or 직전 매수시점 대비 상향 이동 시 순자산액의 약 2% 주식형 ETF 매수 (차트 4, 5, 9 구간)



- 동일밴드 내 최대 매수 한도를 3회로 제한하여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 확보(차트 8 구간)

- 4% 리밸런싱 조건 달성 시에는 조건 달성일의 KOSPI200 지수 종가가 신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최초설정일 또는 4% 수익 조건 달성일)의 KOSPI200 지수의 종가가 348pt.이면 348pt가 기준이 되며 해당 종가를 기준으로 밴드를 약 지수의 2.0% 수준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 초기설정시 지수종가의 2% 수준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매수 밴드로 사용합니다. 목표수익률 달성시 마다 목표달성일 지수종가의 2% 수준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합니다.
- 주식 관련 자산 매수 시에는 장 중 실시간으로 KOSPI200지수의 가격 변동을 관찰하여 주식 관련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 단, 국내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의 9시~9시 10분 사이, 15시 20분~15시 30분 사이에는 분할매수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지수가 상방 혹은 하방 밴드를 터치하더라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전 설정된 밴드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 이후 설정된 밴드를 터치할 경우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 시간대의 ETF거래는 시장과 왜곡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급격한 가격 변동 등의 요인으로 주식 관련 자산을 매입하지 못하거나 혹은 매입해야 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주식 관련 자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설정된 밴드를 터치하지 않고 반등/락 시에는 매수되지 않습니다.
- 상기의 전략 예시는 이 투자신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 "예시" 로서 실제 펀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또는 운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펀드 리밸런싱 수익률 달성으로 주식관련 자산을 매도하고 채권관련 자산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당일 리밸런싱 수익률을 하회/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① 투자신탁 설정 초기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② 위험관리를 위하여 투자환경 및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 시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인 주식 및 채권 관련 ETF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통화 등의 지수에 연동하는 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ETF 가 추종하는 지수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펀드자산의 가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서도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 및 기타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해당국의 증권시장 법령, 세제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규모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및 헤지 목적으로 채권, 주식, 통화 등과 관련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위험수준(변동성)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수익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은 타 집합투자업자의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고 다른 투자신탁 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 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의 평가가격일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실행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등락 과정에서 사전에 나누어진 구간에서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식관련자산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 따라 매수 조건이 발생한 가격 수준에서 주식관련자산을 매입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관련자산의 매매과정에서 계획된 투자전략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에 따른 추적 오차 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부분은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채권부분은 채권 및 채권 상장지수펀드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될 예정이며, 상장지수펀드는 그 추종 지수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상장지수펀드에서 발생하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KOSPI200 지수 및 채권 지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변경 과정 및 전략 변경 후 추가 손실 발생 위험	사전에 정한 조건을 달성한 후 보유 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밸런싱 후에도 보유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 의 이상가격 종가 형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공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가기준으로 산출한 펀드 수익률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통화 등의 지수에 연동하는 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ETF 가 추종하는 지수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펀드자산의 가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서도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 및 기타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해당국의 증권시장 법령, 세제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 수익률 달성이 지연될 위험	적립투자를 하는 동안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주식투자비중을 채우지 못하고 동시에 사전에 정하여진 리밸런싱 수익률을 달성하는데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매수 전략상 운용 기간 내 주식형 ETF 를 펀드 내 가용 현금 수준에서 전부 편입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분할매수 전략 활용이 불가능 해 질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시장지수와 펀드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리밸런싱 수익률 달성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시장지수대비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ETF 분할매수 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진 위험	이러한 전략은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분할매수 과정에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나타날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에 따른 추가 손실 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주식 관련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주식 관련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 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매매하는 날의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주식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 누적성과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 는 해당 증권의 상장국가 관련 규정 및 해당 증권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내부 기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 폐지시 해당 ETF 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금을 주식현물, 현금, 파생상품 또는 유사한 ETF 등의 형태로 분배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해당 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잔여자산을 분배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장 폐지시 해당 ETF 의 거래금액과 회수금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세금 등의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ETF 가 추종하는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며, 잔여자산을 분배 받은 후 해당자산으로 재투자할 적절한 ETF 를 찾지 못 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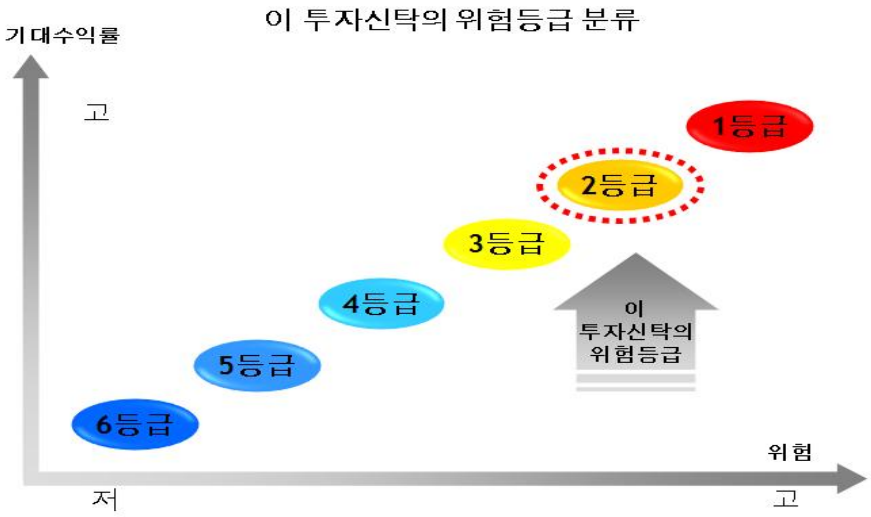
3)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투자신탁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분산효과 및 리스크 관리 실수의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발행자, 자산의 종류, 산업, 섹터, 전략, 국가 혹은 지역 등에 대해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집중된 리스크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리스크 관리 시스템들은 시장의 과거 추이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시장 추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실수는 펀드 성과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회전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매매를 할 때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매매의 회전율이 높을 수록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의 위험 및 임의 전환의 위험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당사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주가지수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을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 예시
Level 1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Level 2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Level 3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Level 4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Level 5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Level 6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 매입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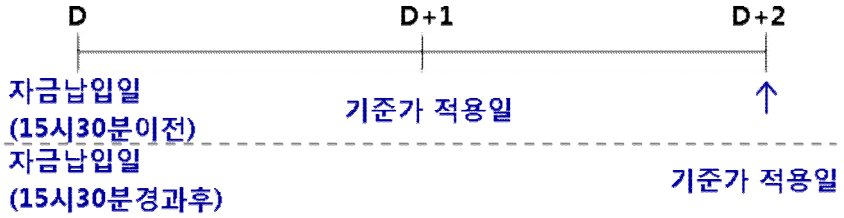
(CG)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중도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가.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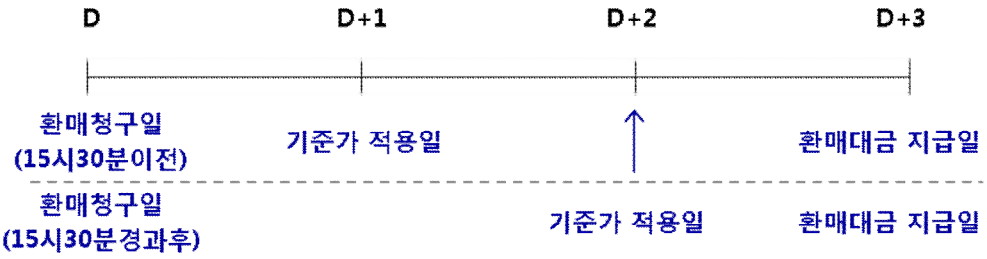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기타 법 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라.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전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사.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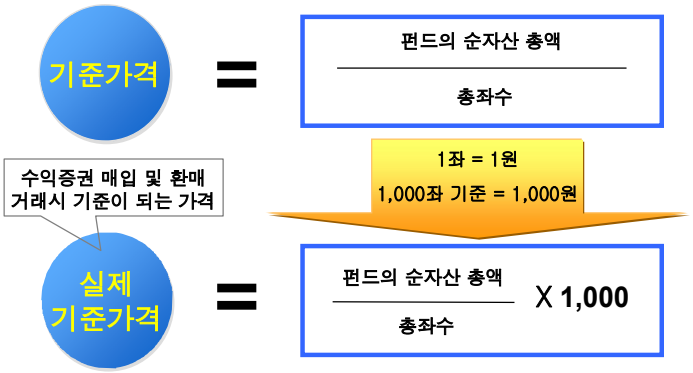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①-2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인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비상장 주식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방법을 결정.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파생결합증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의 평균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수수료율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8%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4%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55%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40	0.4	0.03	0.01	0.84	0.70	0.0056	0.8456	0.8456	0.218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40	0.2	0.03	0.01	0.64	0.40	0.0056	0.6456	0.6456	0.22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40	0.8	0.03	0.01	1.24	1.04	0.0056	1.2456	1.2456	0.24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40	0.4	0.03	0.01	0.84	0.58	0.0056	0.8456	0.8456	0.21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40	0.1	0.03	0.01	0.54	-	0.0000	0.5400	0.54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40	0.03	0.03	0.01	0.47	-	0.0049	0.4749	0.4749	0.33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40	0.5	0.03	0.01	0.94	-	0.0000	0.9400	0.94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	0.40	0.25	0.03	0.01	0.69	-	0.0032	0.6932	0.6932	0.2265

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0.40	0.45	0.03	0.01	0.89	-	0.0000	0.8900	0.89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0.40	0.225	0.03	0.01	0.665	-	0.0000	0.6650	0.6650	0.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40	0.2	0.03	0.01	0.64	-	0.0000	0.6400	0.64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40	0.15	0.03	0.01	0.59	-	0.0000	0.5900	0.59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0.40	0.14	0.03	0.01	0.58	-	0.0000	0.5800	0.5800	0.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40	0.3	0.03	0.01	0.74	-	0.0000	0.7400	0.74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40	0.6	0.03	0.01	1.04	-	0.0000	1.0400	1.0400	0.0000
지급시기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비용, 채권평가비용, 부동산감정평가비용, 감사비용, 펀드평가비용, 지수사용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1.09 ~ 2024.01.08]

주2)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1.09 ~ 2024.01.08]

주3)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이자비용, 현금담보이자비용 등 기타 이자비용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 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기간 중 해당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증권거래비용	85,084
금융비용	0
발행분담금	1,631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차감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0.00%]를 추정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8)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해당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5	256	350	555	1,16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5	256	350	555	1,161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6	175	248	404	86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6	175	248	404	8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8	262	403	706	1,60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8	262	403	706	1,6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7	178	273	479	1,09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7	178	273	479	1,0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5	113	175	306	69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55	113	175	306	6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9	100	153	269	61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49	100	153	269	6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6	198	304	532	1,21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6	198	304	532	1,2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1	146	224	393	89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1	146	224	393	8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1	187	288	504	1,14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1	187	288	504	1,1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8	140	215	377	85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8	140	215	377	85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6	134	207	363	82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6	134	207	363	8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0	124	191	334	76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0	124	191	334	7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9	122	187	329	74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59	122	187	329	748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0	209	293	472	1,004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0	209	293	472	1,00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1	272	389	641	1,38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1	272	389	641	1,388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8%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3) Class A-e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4%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4) Class AG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5) Class A 와 Class C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Class A-e와 Class C-e 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10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라.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 C-Pe, S-P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연 1,5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소득이 연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단, 분리과세선택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구분	'13.3.1 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면제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주 1)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퇴직연금), Class C-P2e(퇴직연금) 가입자, Class S-P2(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 (2023.01.09 ~ 2024.01.08)	삼덕회계법인	확정 전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 기	제0기	제0기
	(2024.01.08)	(0000.00.00)	(0000.00.00)
운용자산	40,881,062,387	0	0
증권	27,699,815,655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3,181,246,732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325,797	0	0
자산총계	40,888,388,184	0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978,364,113	0	0
부채총계	4,978,364,113	0	0
원본	32,812,321,187	0	0
수익조정금	-438,141,292	0	0
이익잉여금	3,535,844,176	0	0
자본총계	35,910,024,071	0	0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제0기	제0기
	(2023.01.09 ~ 2024.01.08)	(0000.00.00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운용수익	3,537,003,404	0	0
이자수익	179,280,949	0	0
배당수익	537,962,710	0	0
매매/평가차익(손)	2,819,759,745	0	0
기타수익	156,845	0	0
운용비용	-104,524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04,524	0	0
기타비용	-1,211,549	0	0

당기순이익	3,535,844,176	0	0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0)%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5) 주식의 매매회전율 산출과 관련하여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00	0	0.00	0.00	0.00	31.98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은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하며 상기의 요약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에는 증권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이 다음과 같이 포함·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타수익 :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기 0.16백만원 발생)
- 기타비용 :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기 0백만원 발생)

주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81,081.56	84.98	0.05	0.00	0.0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00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181,081.56	84.98	0.05	0.00	0.00	0.00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제외하였습니다.

2)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1기(2024.01.08) 금 액		제0기(0000.00.00) 금 액		제0기(0000.00.00)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3,181,246,732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181,246,732		0		0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27,699,815,655		0		0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27,699,815,655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7,325,797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7,289,220		0		0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36,577		0		0	
6. 기타자산	0		0		0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40,888,388,184		0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4,978,364,113		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4,557,656,89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419,471,303		0		0	
4. 수수료미지급금	1,235,920		0		0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4,978,364,113		0		0
자 본						
1. 원 본	32,812,321,187		0		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438,141,292		0		0	
3. 이월잉여금	3,535,844,176		0		0	
(발행좌수 당기: 32,812,321,187 좌	이익잉여금	3,535,844,176		0		0
전기: 0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1,094.41 원						
전기: 0.00 원						
전전기: 0.00 원)						
자 본 총 계		35,910,024,071		0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0,888,388,184		0		0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기(2023.01.09 ~ 2024.01.08) 금 액		제0기(0000.00.00 ~ 0000.00.00) 금 액		제0기(0000.00.00 ~ 0000.00.00)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717,400,504		0		0
1. 이 자 수 익	179,280,949		0		0	
2. 배당금수익	537,962,710		0		0	
3. 수수료수익	156,845		0		0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092,866,635		0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3,092,866,635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73,106,890		0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273,106,89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1,316,073		0		0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1,316,073		0		0	
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535,844,176		0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0775964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 키움 New 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 1 호[혼합-재간접형]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1.09 ~ 2024.01.08	0.00	0.00	1,209.73	1,249.06	881.61	925.32	328.12	352.01

◈ 키움 New 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 1 호[혼합-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1.09 ~ 2024.01.08	0.00	0.00	500.95	515.57	386.23	405.95	114.72	122.98

◈ 키움 New 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 1 호[혼합-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1.09 ~ 2024.01.08	0.00	0.00	500.46	516.15	386.34	402.20	114.12	122.34

◈ 키움 New 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 1 호[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1.09 ~ 2024.01.08	0.00	0.00	38.27	38.86	33.16	34.27	5.11	5.47

◈ 키움 New 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 1 호[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1.09 ~ 2024.01.08	0.00	0.00	170.68	175.39	76.79	79.83	93.88	100.65

◈ 키움 New 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 1 호[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1.09 ~ 2024.01.08	0.00	0.00	2.00	2.00	0.00	0.00	2.00	2.15

◈ 키움 New 스마트인베스터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제 1 호[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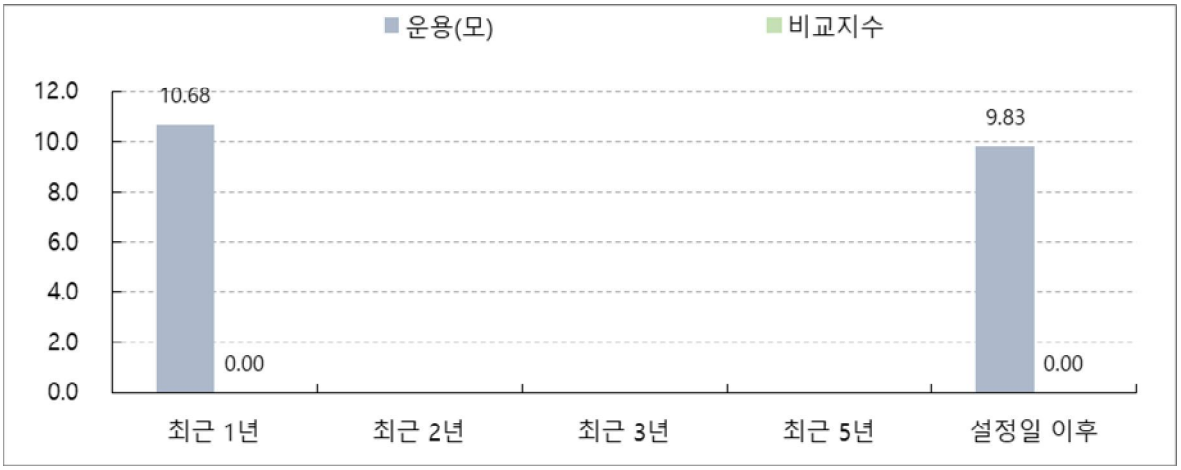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3.01.09 ~ 2024.01.08	0.00	0.00	0.99	1.04	0.48	0.51	0.51	0.5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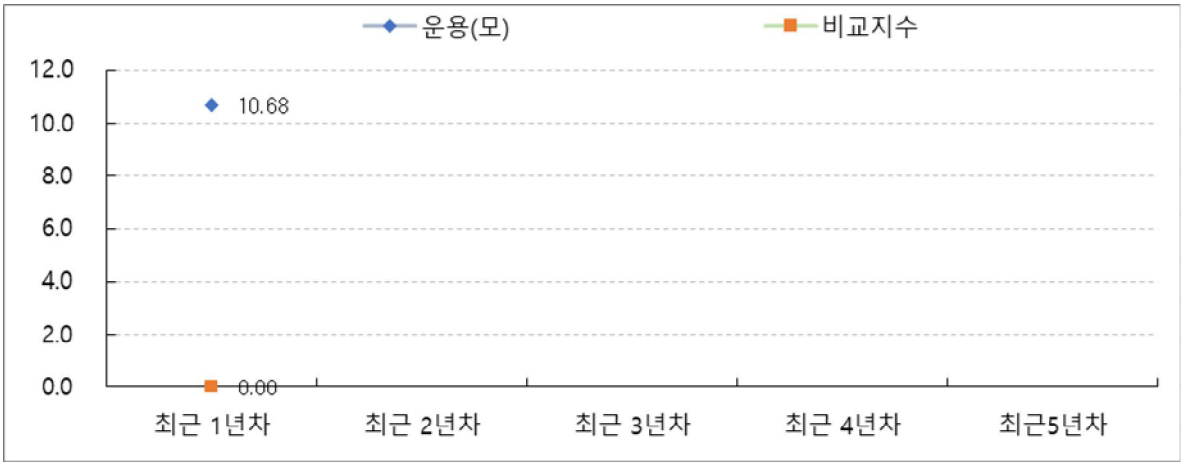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2.27~ 2024.02.26	2022.02.27~ 2024.02.26	2021.02.27~ 2024.02.26	2019.02.27~ 2024.02.26	2023.01.09~ 2024.02.26
운용(모)	2023.01.09	10.68				9.83
비교지수		0.00				0.00
수익률 변동성		7.84				7.45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2023.01.11	9.76				8.92
비교지수		0.00				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01.09	9.98				9.09
비교지수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2023.01.11	9.33				8.49
비교지수		0.00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1.11	9.76				8.92
비교지수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3.01.09	10.16				9.32
비교지수		0.00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3.01.09	9.93				9.10
비교지수		0.00				0.00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연도별수익률 추이(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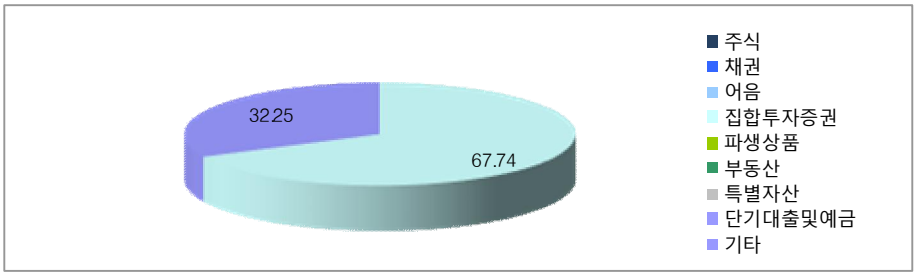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3.02.27~ 2024.02.26	2022.02.27~ 2023.02.26	2021.02.27~ 2022.02.26	2020.02.27~ 2021.02.26	2019.02.27~ 2020.02.26
운용(모)	2023.01.09	10.68				
비교지수		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2023.01.11	9.76				
비교지수		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01.09	9.98				
비교지수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2023.01.11	9.33				
비교지수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1.11	9.76				
비교지수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3.01.09	10.16				
비교지수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3.01.09	9.93				
비교지수		0.00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5) 운용(모), Class A, A-e, C, C-e, C-F, C-Pe : 최근 2년차 수익률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4.01.08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277.0	0.0	0.0	0.0	0.0	0.0	131.9	0.0	408.9
	(0.00)	(0.00)	(0.00)	(67.74)	(0.00)	(0.00)	(0.00)	(0.00)	(0.00)	(32.25)	(0.00)	(100.00)
KRW	0.0	0.0	0.0	277.0	0.0	0.0	0.0	0.0	0.0	131.9	0.0	408.9
	(0.00)	(0.00)	(0.00)	(67.74)	(0.00)	(0.00)	(0.00)	(0.00)	(0.00)	(32.25)	(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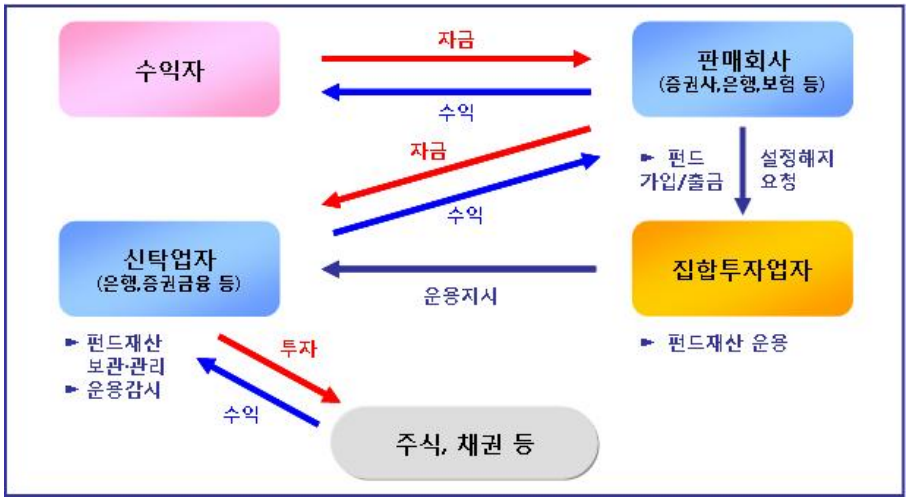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2층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자본금	7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36(당)기 2023.12.31현재	제35(전)기 2022.12.31현재	구분	제36(당)기 2023.01.01 ~ 2023.12.31	제35(전)기 2022.01.01 ~ 2022.12.31
현금 및 예치금	49	75	영업수익	813	900
증권	2,249	2,151	영업비용	586	628
파생상품자산	-	-	**영업이익**	**227**	**273**
대출채권	48	45	영업외수익	16	0.22
유형자산	4	11	영업외비용	2.94	9.22
사용권자산	14	2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40**	**264**
기타자산	255	215	법인세비용	47	69
자산총계	**2,618**	**2,524**	**당기순이익**	**193**	**195**
예수부채	2	1	기타포괄손익	-	-
리스부채	12	24	**총포괄손익**	**193**	**195**
기타부채	150	169			
파생상품	-	-			
부채총계	**164**	**193**			
자본금	710	710			
자본잉여금	171	171			
이익잉여금	1,572	1,450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자본총계	**2,453**	**2,331**			
부채 및 자본총계	**2,618**	**2,524**			

4) 운용자산규모

[2024.10.13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27,393	96,605	2,211	65,067	11,929	51,078	35,217	5,964	130,816	426,282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칠패로 37 (연락처: (02)2004-0000)
홈페이지	www.kr.hsbc.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보관대리인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외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kr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연락처: (02) 2251-130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3층 (여의도동, CCMM빌딩) - 연락처: (02) 785-1410 - 홈페이지: www.egap.co.kr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

나.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

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 총회 등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나.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간의 거래내역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 분	상 세
투자주체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 도모
투자시기 및 투자금액	- 최초설정일에 2억원을 일시 납입 예정
투자기간	- 최소 3년 이상(다만,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1)에는 예외)
투자금 회수계획	- 최소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서 공시

	- 최소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투자신탁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를 통해서 공시

주1)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ⅰ)존속기간 3년 미만인 펀드, ii)당연 해지사유 발생, iii)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iv)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해산하는 경우, v)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 관련 법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일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 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